2024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

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생활부
작성자 : 김호진(051-606-2167)
확인자 : 전영철(051-606-2170)

1.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

가.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

연번	구성원	성명	연락처	운영기간(임기)	비고
1	교감	***	606-2101	2024.3.1.~2025.2.28.	
2	책임교사	***	606-2170		
3	교사	***	비공개		
4	상담	***	비공개		
5	보건	***	비공개		
6	학부모	***	비공개		
7	학부모	***	비공개		
8	학부모	***	비공개		
9	학부모	***	비공개		
	행정담당	***	606-2167		

○ 전담기구 조직 및 업무분장

교감 : 총괄

학교폭력 책임교사 (학생생활부장)

- **학교폭력 사안 조사 협조(사안조사)**
  - 학교폭력 사실 확인
  - 목격자, 담임교사, 전문상담원 등 협조
  - 피해 및 가해 사실, 조사진행 상황 협조
  - 증인 및 증거 자료 확보
  -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사안조사 시 동석
  - 교육지원청 보고

보건업무 담당자

- **피해 및 가해학생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 상황 파악**
  - 피해학생 일시보호,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지원
  - 긴급 상황 시 119 연락 및 병원 이송
    * 병원 이송 시 동행
- **피해 학생의 상담 및 치료 비용 지원 업무 담당**
  *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상담업무 담당자

- **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**
  - 상담을 통해 심리적·정서적 상황 파악, 필요시 심리검사 실시
  - 상담 결과 학교장 보고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보고
- **집중보호 및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 관리**

학부모

- **사안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**
- **그 밖에 학교장이 정하는 사항**

❍ 전담기구 심의의결 사항 및 역할
- 사안접수 및 관련 학생 보호자 통보
- 학교폭력 사실 확인
- 교육(지원)청 보고
-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 시 동석
-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
- 학교장 긴급조치 여부 심의
-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 심의
- 졸업 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
-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
-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후속 조치
- 그 밖에 관련 규정 및 법, 교육부, 교육(지원)청에서 지침으로 정하는 사항

❍ 전담기구 심의의결 방법
- 의결정족수 :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여 또는 출석
- 심의의결 방법 :학교폭력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 또는 위원간의 협의
  ※ 의결 시 반드시 학부모 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.
- 그 밖에 사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(제척·기피·회피,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성사안, 아동학대 사안 등)에 필요한 사항은 교장이 정할 수 있음.

나. 학교폭력 신고체계

❍ 학교폭력 신고처 : 117 학교폭력 신고 센터(연중 24시간), 학교폭력 담당자(학생지원팀장), 담임, 생활관, 보건실, 상담실 등
- 목격자 신고 활성화,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철저

❍ 학교폭력 실태조사 기간 운영 : 학기별 1회(연 2회)

다.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

단계	처리 내용
학교폭력 발생인지	•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교사, 학생, 보호자 등의 신고 접수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
↓	
신고 접수 및 보고	• 신고 접수된 사안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<양식1-1> 기록 및 학교장 보고 ※ 중대사유는 교육(지원)청 즉시 유선 보고 •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의사 확인 및 분리(최대 7일 범위 이내) 실시 • 가해학생 긴급조치 시행(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) • 48시간 이내 교육(지원)청 공문 보고 • 담임, 관련 학생 및 보호자 통지(구두, 유선 등) • 학교폭력제로센터 전담조사관 요청

↓

즉시조치 (필요 시 긴급조치 포함)	• 피·가해 학생 격리 및 안전조치, 보복행위 예방(피해학생 조치 우선) •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인 경우 수사기관에 반드시 유선신고 및 공문 발송(필요시 피해학생 전문기관 연계) • 필요시 학교장 긴급조치를 내부결재 후에 실시하고,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지

↓

사안조사	(전담조사관 사안조사 시) •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에 협조(일정 및 장소 등) •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시 학교측의 협력 방법(동석 등)은 관련학생의 심리적 상태, 나이, 사안의 성격 및 조사관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판단 (전담기구 사안조사 시) • 구체적으로 사안을 조사사여 6하원칙에 따라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• 조사된 내용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, 관련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요구사항 파악 (예견되는 조치 사전 언급 금지)

↓

전담기구 심의 (자체해결 여부)	•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(4가지)의 해당 여부를 전담기구에서 협의를 통해 심의 - 2주 이상의 신체적·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-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-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-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, 진술,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

↓ ↓

자체해결 요건 충족		**자체해결 요건 미충족**
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		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
•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(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)으로 확인	➜ **부동의**	• 피해 및 가해 사실 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학교장 및 심의위원회에 보고
↓ **동의**		↓
학교장 자체해결 교육(지원)청 결과 보고(종결)		**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 요청**

※ 전담기구 심의결과 자체해결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, 반드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함.

※ 사안 처리의 전 과정에서 필요 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, 학교는 학교폭력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할 수 있음

라. 학교폭력예방 계획(안)

1) 학교폭력예방 교육 및 활동 방침

가) 학교 공동체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예방활동 강화

다)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 방안 교육

라) 공감, 의사소통, 감정조절 등의 교육을 위한 활동 포함

마) 학생참여(캠페인, 동아리 등) 활동 포함

바) 학부모 교육 시 가족 간 의사소통 강화 내용 포함

나) 전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반영

사)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예방교육 진행(어울림 프로그램)

2)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

대상	시기	내용	비고
학생	학기 중 1회, 총2회 이상	*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안내 *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내용 안내 * 지능정보화 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내용 안내 *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 * 교육과정과 연계한 어울림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	
교직원	학기 중 1회, 총2회 이상	*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안내 *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내용 안내 * 지능정보화 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내용 안내 *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 *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*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연수 소개	
학부모	학기 중 1회, 총2회 이상	*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를 위한 정보 제공 * 자녀 자살예방을 위한 부모역할 안내 *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자녀훈육법 안내 * 학교 상담서비스 및 이용방법 안내 * 자녀 교육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연수 소개	학부모연수 및 자료 배포

3) 교내외 순찰 및 안전대책

가) 학교 내 순찰 : 생활관(학생 기숙사) 오전 및 오후, 야간 수시 순찰, 학교 내 건물 야간 순찰

나) CCTV 모니터링 : 학교 내에 설치된 CCTV 사각지대 제거 및 위험 요인 모니터링

다) 담임, 상담, 보건, 사감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학교폭력에 대한 신속 대처

라)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강화 및 개발 운영